

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 1. 20.)에서
의결된 **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**을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1월 28일

양구군의회 의장 김철



양구군의회 규칙 제 너 호

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양구
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
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양구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윤리특별위원회(이하
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
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「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
부의장으로 하며,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
려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재적의원 중 제8조제2호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
로 구성한다.

제3조(자문)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양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윤리심사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「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」에 따른 “행동강령 자문위원회”에서 대신하며, 그 구성과 운영 또한 같다.

제4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제3조제2항의 “행동강령 자문위원회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구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·보고한다.

1. 「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」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및 징계
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
3.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

제6조(심사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이 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.

제7조(심사기한 등) ① 위원회는 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8조(회의 알림)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윤리심사, 징계·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(이하 “심사요구 의원”이라 한다)
2. 윤리심사, 자격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(이하 “심사대상 의원”이라 한다)

제9조(의사)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0조(심문)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최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.

제11조(소명) ①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,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

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.

제12조(증명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3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4조(심사보고)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·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또는 「양구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